

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

「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2. 13.

세종특별자치시장

1 사업 목적

-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

2 사업 개요

- (지원대상)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
 - ※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"탁월"·"우수"인 기업 예외적 지원
- (지원기간)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*(최대 3년간 지원**)
 - * 지원기간은 예산상황 및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- ** 지원기업 2년 지원 + SVI 평가등급 "우수" 이상 시 추가 1년으로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동일하게 적용됨
- (지원조건 및 수준)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월 50~90만원 지원
 - ※ (신규채용 예외 인정) 종전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중 계속근로자,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자,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(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) 등

<인건비 지원 개요>

구분	SVI 탁월기업	SVI 우수기업	일반기업
지원금액	월 90만원	월 70만원	월 50만원
지원대상	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	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	30인 미만 사회적기업

3 참여 자격

1 [예비]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(신규)

○ 참여자격

- 상시근로자 수 30인* 미만의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

*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,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(단,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)

- 공고일 전월 말 기준,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한 기업

○ 유급 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 판단기준

-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, 임금지급 사실,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

《 참여제외 대상 》

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
②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(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)

- 사회서비스 제공형,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도 사회서비스(사회공헌실적) 제공실적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

- 다만, 특정취약계층(중증장애인)을 근로자의 20%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

③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고용조정(감원)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
- 단,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
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(감원)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

④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

- 종전 일자리창출사업(~ '24년) 최대 지원기간*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

*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 기간(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(예비),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내(인증)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지원기간(예비 2년, 인증3년)지원 여부로만 판단

⑤ 유사 일자리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기업 중 근로자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근로자 지원 제외

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(가시간병서비스, 산모신생아도우미, 장애아동 재활치료, 장애인활동보조, 노인돌보미, 지역사회투자사업 등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

⑦ 지속적·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·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
⑧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

4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접수기간 : 2026. 2. 13(금) ~ 2. 27(금) 18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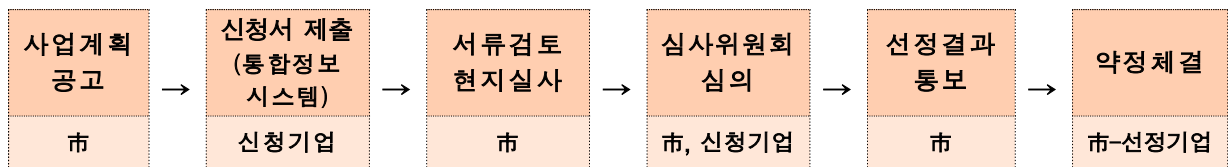
※ 기한 내 미접수시 신청 불인정(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)

○ 신청방법 : 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 입력 및 등록 / 서면제출 불가

※ 시스템 문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☎1661-4006

○ 신청서류 : 공고시 별도 안내

○ 선정절차



- 서류검토, 현지실사 결과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 제외

- 심사위원회 심의 시 해당기업은 참석하여 사업계획 및 제출 서류 등을 기반으로 설명하여야 함(별도 일정 통지)

5 심사 기준 및 선정 방법

1 심사위원회 운영

- 일시·장소 : 2026. 3. 17.(화) 예정 / 세종시청 회의실(별도안내)
 - ※ 심사일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일정 등 기타사유로 변경 될 수 있음
- 심사기준
 -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※SM 평가'탁월, '우수 기업우대
 - (배점) 사회적 가치(30), 고용성과(30),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의 견실성(30), 기업혁신(10)

< 인증·지정 별 심사기준 >

- 예비사회적기업 :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평가
- 인증사회적기업 : 수익창출가능성,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평가

6 신청 서류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필수)

《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SEIS) 입력 》

- ① 사업신청서 [별지 제1호서식] (시스템입력), 사업계획서 [별지 제3호서식]
-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③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[별지 제4호의2서식]
- ⑤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(신청 직전 월부터 1년분) ※'25. 2월 ~ '26.1월(12개월)

※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(스캔으로 통한 전자화)하여야 함

※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

-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 신고 내역(부가가치신고서), 거래처별합계표(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)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
-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
-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/ 증빙자료 필수

7 유의사항

-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하여 서류 접수하여야 인정됨(현장(직접)제출 받지 않음)
-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,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, 사업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
-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세종시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 미공개
- 기타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고용노동부 「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 규정을 따름
- 상기 공고사항은 세종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알림
-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담당자(☎044-300-4833)

【참고 1】 취약계층의 범위

취약계층의 범위

(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)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

1.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
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
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‘청년’ 중 또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‘경력단절여성등’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7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9.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- 나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12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

* 취약계층의 판단기준(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) 참고

【참고 2】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

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

●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

대분류	중분류	내용설명
2.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	23.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	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-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으로 - 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-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(명예)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(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) -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- 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(아웃소싱 포함)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-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 - 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-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·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(권고사직 포함) - 결혼, 임신, 출산,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-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(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)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·일상적인 명예퇴직 - 구체적 인원감축계획,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,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·절차·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

*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

* 예시: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

● 고용유지조치(고용보험법 제21조)

- 경기의 변동,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,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,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,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